채움 전기차 충전 계약서

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당사자 | 서비스이용자 | 상호(사업자등록증) |  | 사업자등록번호 |  |
| 주소 |  |  |  |
| 전화번호 |  |  |  |
| 이메일 |  |  |  |
| 서비스제공자 | 상호 | 주식회사 채움모빌리티 |
| 대표자 | 윤병열 | 사업자등록번호 |  |
| 주소 |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00 에이스골드타워 405호 |
| 전화번호 | 02)552-9960 |
| 설치수량 | ( )대 |
| 계약기간 | 서비스 운영 시작일로부터 10년 |
| 특약사항 | 추가비용 (VAT별도) |  |
|  |
| 년 월 일[서비스이용자] (인)[서비스제공자] 주식회사 채움모빌리티 (직인)\* 본 계약서는 당사자 양측 날인 후 각자 1부씩 보관. |

계약일반조건

제 1조 전기차충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

① “서비스제공자”는 “서비스이용자”가 제공한 장소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.

② “서비스제공자”는 본 계약기간 동안 설치된 전기차충전시 설을 운영(이하 “서비스”)한다.

③ “서비스제공자”는 전기차충전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전기차 충전 시장의 공용충전 서비스 요금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충전 요금을 정한다. “서비스제공자”는 충전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등 기타 필요한 경우 충전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.

④ “서비스제공자”는 전기차충전시설의 관리, 하자보수, 부품 교환 등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를 “서비스제공자”의 비용으로 수행한다. 다만, “서비스이용자” 또는 충전서비스 이용자의 책 임 있는 사유로 전기차충전설비가 파손ㆍ멸실ㆍ훼손된 경우, 그 복구 비용은 “서비스이용자”가 부담한다.

⑤ “서비스이용자”는 충전서비스이용자가 전기차충전설비에 편리하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, “서비스 제공자”의 충전기의 유지보수, 정기점검 등을 위한 통행에 협조해야 한다.

⑥ “서비스이용자”가 “서비스제공자”에게 전기차충전시설 이 전을 요청하는 경우, 이전 및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“서비스 이용자”가 부담한다.

 ⑦ “서비스제공자”가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본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고, “서비스이용자”는 이를 승낙한다

제 2조 계약의 해제ㆍ해지

① “서비스제공자”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

1.설치장소 실사 결과 또는 전기차충전시설 설치공사 과정 에서 전기차충전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“서비스제공자” 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(기술적,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경 우뿐만 아니라 과도한 비용발생, 민원 발생 우려 등 사실상의 제약 사유를 포함함)

2.“서비스이용자”가 “서비스제공자” 또는 시공업체 또는 주 무관청 등에 제공한 서류 또는 진술이 사실과 중요한 점에서 다른 경우

② “서비스이용자”의 책임 있는 사유(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 함함)로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“서비스이용자”는 계약해지일 로부터 [1]개월 이내에 각 전기차충전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방 식에 의하여 산정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

1.위약금 산정 방법: 기투입비용(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비용, 인건비, 자재비 등 비용 일체) X 위약금율

2. 위약금율

|  |  |
| --- | --- |
| 해지일 기준 각 전기차 충전시설 서비스 계약의 잔여기간 | 위약금율 |
| 서비스 계약 기간의 80% 이상 | 100% |
| 서비스 계약 기간의 60% 이상 ~ 80% 미만 | 80% |
| 서비스 계약 기간의 40% 이상 ~ 60% 미만 | 60% |
| 서비스 계약 기간의 20% 이상 ~ 40% 미만 | 40% |
| 서비스 계약 기간의 20% 미만 | 20% |
| 계약기간 만료 | 0% |

③ “서비스이용자”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, “서비스제공자”는 “서비스이용자”의 비용으로 전기차 충전시 설을 철거 혹은 회수할 수 있다.

제3조 계약의 종료

① 본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며, 본 계약의 기간은 서비스운영 시작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. 계약기간 종료일로 부터 30일 전까지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, 본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. ② 본 조에 따라 전기차충전시설을 철거하는 경우, 통상의 설 치에 수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“서비스제공자”는 원상회복의무 를 부담하지 아니한다